

“직원이 건강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 5월 30일(금)부터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현주)은 5월 30일(금)부터 6월 20일(금)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 연도별 인증기업 수 : '22년 14개 → '23년 27개 → '24년 26개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 게시 위치: <https://www.khepi.or.kr/ace/hfwp> → 건강친화 지원 → 사업안내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한도 우대 등 무역보험혜택, 정부인증제도(여가친화인증)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매년 심사부문별 우수한 인증기업(10개)에는 정부 포상과 함께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인증 유효기간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재심사를 통해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2022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14개 기업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연장심사에서는 2025년 신규 심사와 달리 최초 인증심사 당시 심사단으로부터 제안된 개선사항의 실제 시행 여부를 평가하여 기업의 개선 노력과 이행 의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개인의 건강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건강이 곧 기업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밝혔다.

김현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건강친화기업을 운영 하면서 조직 내 건강문화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공고문

2.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 안내 웹포스터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044-202-2820)
		담당자	주무관	김보은 (044-202-2835)
담당부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정책부	책임자	부 장	양윤희 (02-3781-2208)
		담당자	부 원	양선영 (02-3781-2209)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공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근거

《 건강친화제도의 예시 》

- 건강친화경영: 경영진의 기업 내 건강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노력, 경영진의 근로자 건강 중요성 인식, 건강친화제도 담당조직 구성, 건강친화제도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 근로자를 위한 건강휴가·휴직 지원제도, 기업 전반의 건강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
-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제도 운영 시 직원 의견 및 요구 반영, 기업 내 취약 계층을 위한 건강형평성 제도 시행,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건강증진 거버넌스의 구축·운영 등
- 건강친화활동: 직원 건강 현황 파악 및 위험요인 분석 진행, 기업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대상 효과 환류 등

2.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으로서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법인 및 단체 * 개별 사업장이 아닌 법인 내지 단체 단위로 신청
 -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
 - 그 밖에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

《 기업구분 》

구분	관계법령
대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
기타 법인 및 단체	위 네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인·단체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한함

-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위한 최소기준* 충족 필요(인증심사시 증빙 서류 제출)
 - * 보건관리자 선임, 건강진단 실시, 보건휴가 시행, 휴게시설 설치 등(‘서식 제2호’ 참고)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신청기간: '25. 5. 30.(금) ~ 6. 20.(금) 18:00(신규)
'25. 5. 30.(금) ~ 6. 9.(월) 18:00(유효기간 연장)
- 신청방법: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 관련 서식 직접 업로드
 - * <https://www.khepi.or.kr/ace/hfwp/> > 건강친화인증 > 인증신청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
(‘신청·접수’ 메뉴는 신청기간 동안에만 활성화)
- 결과발표: 2025. 11월(예정)
- 비용: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참여 독려를 위하여 당해 연도(‘25년) 면제

4. 제출서류(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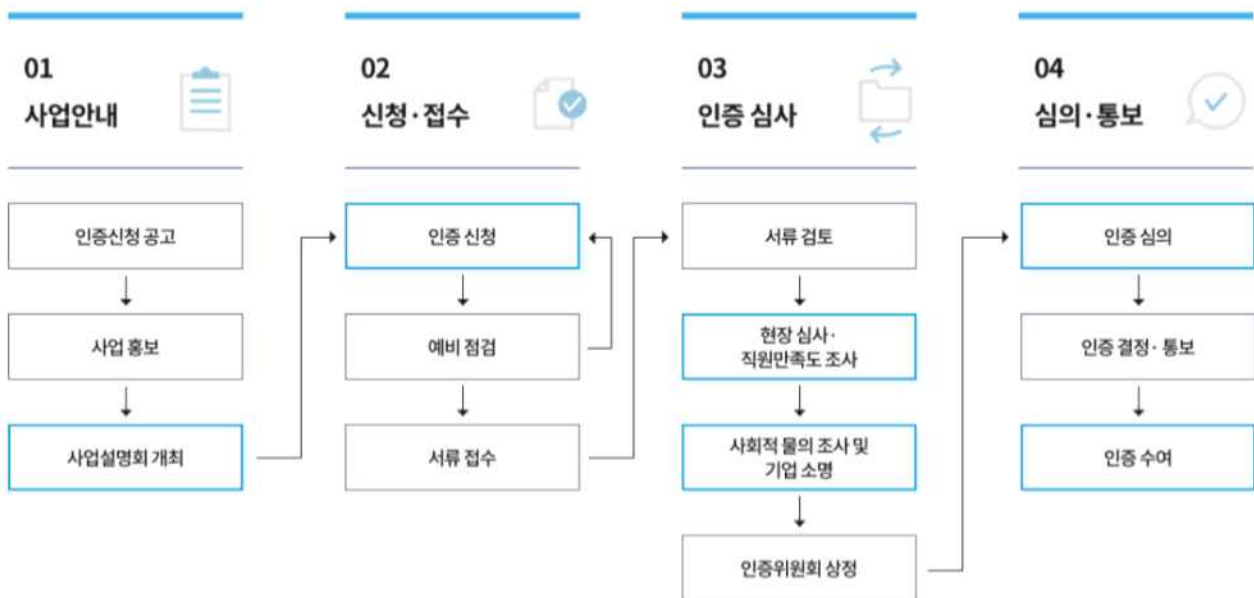
- 인증신청서(서식 제1호)
-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최소기준 점검결과(서식 제2호)
- 건강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서식 제3호)
- (기업유형별)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서식 제4호)
- (기업유형별)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증빙 서식(서식 제5호)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 > 건강친화인증 > 인증신청 또는 알림마당 > 자료실

5. 인증 절차 및 추진일정

- 인증 절차



- 「건강친화기업 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의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접수·심사·평가 업무 수행
- 인증심사 결과를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 인증기업(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 추진 일정

《건강친화기업 인증 사업 추진 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인증 기준

○ 심사항목: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 인증통과기준

- (공통사항) 건강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건강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등

- 기업 유형별 통과기준

《합격 총점》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기타 법인 및 단체	중소기업
80점 이상	75점 이상	70점 이상

《심사 부문별 최소기준 점수》

심사부문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기타 법인 및 단체	중소기업
건강친화경영	30점 이상	25점 이상	25점 이상
건강친화문화	12점 이상	10점 이상	10점 이상
건강친화활동	12점 이상	10점 이상	10점 이상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부문	심사영역	심사지표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대	중	소	대	중	소
가. 건강 친화 경영(40점)	1. 리더십	1-1. 경영방침 수립·이행	3	3	4	3	3	4
		1-2. 경영진의 의지	3	3	7	3	3	7
		1-3. 건강친화경영 인식 (경영진인터뷰)	5	5	5	5	5	5
	2. 자원	2-1. 조직 구성	5	5	3	5	5	3
		2-2. 예산 편성	5	5	5	5	5	5
		2-3. 환경조성	3	3	6	3	3	6
	3. 제도관리	3-1. 근로시간 관리제도	3	3	4	2	2	2
		3-2. 건강휴가 지원제도	4	4	4	1	2	2
		3-3. 복직·적응 관리	5	5	—	3	4	—
		3-4. 인센티브	4	4	2	3	4	2
	4. 제도개선	4-1. 개선사항 시행 여부	—	—	—	5	4	4
나. 건강 친화 문화(20점)	1. 인식 및 소통	1-1. 건강친화문화 인식 (근로자 인터뷰)	5	5	5	5	5	5
		1-2. 직원 소통	4	4	6	4	4	6
	2. 사회적 책임	2-1. 건강형평성 제고	4	4	3	4	4	3
		2-2.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	3	3	—	3	3	—
		2-3. 건강증진 거버넌스 구축운영	4	—	—	4	—	—
		2-4. 지역자원 발굴 연계	—	4	6	—	4	6
다. 건강 친화 활동(20점)	1. 계획수립	1-1. 건강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	2	2	4	2	2	4
		1-2. 계획수립 및 목표설정	6	6	4	6	6	4
	2. 시행 및 효과평가	2-1. 시행 및 참여정도	8	8	8	8	8	8
		2-2. 효과평가 및 환류	4	4	4	4	4	4
라.직원만족도	직원 만족도	직원 만족도	20	20	20	20	20	20
가+나+다+라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마. 가산점	가산점	담당인력의 전문성	2	—	—	2	—	—
		건강친화 상생협력	2	—	—	2	—	—
		담당인력 교육	—	4	4	—	4	4
		직원 가족 건강 지원	—	—	4	—	—	4
		여가친화인증	2	2	2	2	2	2

7. 심사 방법

- 심사절차: 서류검토(1단계)와 인증심사(직원만족도 조사 포함)(2단계)로 구성

《건강친화기업 인증 심사 절차》

구분	서류검토	현장심사
심사 주체	· 인증심사단	· 인증심사단
심사 대상	· 인증신청 기업(인증신청 최소 기준을 충족한 신청 기업)	· 서류검토 통과 기업
심사 방법	· 제출 자료 검토	· 현장 방문을 통한 종합 심사 · 서류심사 및 담당자 확인 · 경영진 및 직원 인터뷰 · 현장 점검 등
심사 내용	· 기업 자체점검 결과 및 제출 자료 확인 · 미제출 사항 확인 및 인증심사를 위한 보완사항 등 정리	
		직원만족도 조사 · 온라인 직원 만족도 조사
	사회적 물의 사항 검토 ·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별 사회적 물의 확인 · 전문가 협의체 검토에 따라 필요시 기업별 소명 청취	

*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8.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건강친화인증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3, 시행령 제9조의2

9. 인증 기업·기관 특전

- 건강친화인증 로고 사용
-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시행령 별표5

《건강친화인증의 표시》



- 인증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정부 포상 및 우수사례로서 기업 홍보 기회 제공(SNS 홍보, 영상제작 등)
-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지원
- 중견-중소기업 대상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혜택 지원*
 -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한도 우대, 국외신용조사 및 TRADE-SURE 컨설팅
- 정부인증제도(여가친화인증) 참여 시 가산점 부여
- 그 외 인증기업 대상 추가적인 특전 확대 지속 추진 중

10.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인증사무국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 선정 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즉시 취소 및 공표
- 인증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신청 및 인증절차 중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신청서 및 운영실적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별도 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서류심사 전이라도 인증신청 최소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통하여 탈락될 수 있음
- 인증 후에라도 인증 최소기준 위반 시 인증 취소 가능
- 상기 공고 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1. 문의사항

- 건강친화기업인증 운영사무국(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전자우편: healthfriendly@khepi.or.kr
 - 대표전화: 02-3781-2206, 2207, 2209
 - 홈페이지(<https://www.khepi.or.kr/ace/hfwp>) > 알림마당 > Q&A 게시판
 - * 본인인증 필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KHEPI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5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안내

신규 인증 05. 30. |금 ~ 06. 20. |금 18:00까지

유효기간 연장 05. 30. |금 ~ 06. 09. |월 18:00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

모집대상

신규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참여방법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홈페이지
및 유튜브(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통해 확인

문의

건강친화기업 인증사무국
healthfriendly@khepi.or.kr

